

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4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5. 3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 이유

- '95. 1. 5일 개정 공포된 건축법중개정법률 부칙에 의거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인용되고 있는 건축법 관계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정비코저 함.

□ 주요 골자

-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만 개정

□ 근거 법령

-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9조

□ 칙 부

1.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
2. 신구조문대비표 1 부
3. 관계법규 발췌 1 부

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 조제목 “(건축물의 높이제한)”을 “(건축물의 높이제한등)”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“건축법 제51조”를 “건축법 제51조, 동법 제53조, 동법 제59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